“ 아빠의 청렴지수 가족의 행복지수 ”

대 한 탁 구 협 회

수 신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 목 선수 조기 계약 금지 준수 통보

1.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본 협회에서는 경기인등록규정 개정에 따라 선수 조기 계약(스카우트 등)금지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선수 조기 계약(스카우트 등)금지 배경

1) 학생선수의 의무교육 이수 장려 및 기본권 보장
2) 공정한 선수 육성 체계 확립 및 시장 혼란 방지

나. 행정사항

1) 의무교육 이수 전(중학교 졸업 전 등) 선수에 대한 계약은 조기 계약으로서 금지 함
2) 위반자(선수 및 팀 관계자 등)는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조치 함

다. 관련 규정

1) 계약 관련 규정 (경기인등록규정 제2장 전문선수 등록)

> **제14조(등록자격 및 범위)**
> ⑧ 본 등록규정 제12조 제1항의 구분에 따라 등록하되 교육기본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의무교육 이수 전 선수와 실업팀 간의 계약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한다.

2) 위반 시 징계 관련 규정 (경기인등록규정 제5장 징계조치 등)

> **제35조(제한조치)** ① 체육회 또는 협회에서 정한 ‘경기인 등록 규정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.
> 1. 경기인: 1년 이상 5년 이하의 경기인 등록 금지
> 2. 관련된 임직원(단장, 감독, 코치 포함): 2년 이상 5년 이하의 협회의 활동 자격정지
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 ‘경기인등록규정’ 참조

첨부 경기인등록규정 1부. 끝.

대한탁구협회장

수신 시도탁구협회, 산하연맹, 해당 등록팀

★사원 이대호 사무처장 03/25 정해천

협조자

시행 대한탁구협회-657 (2020.03.25.) 접수 ( )

우 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픽로424, 올림픽컨벤션센터 1층 / http://www.koreatta.sports.or.kr
전화 02)420-4240 /전송 02)420-5913 / tabletennis@sports.or.kr / 공개